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5,360,000원에서 [redacted]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 도 완료일까지 월 7,9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 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.

2.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